

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

- 1)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.
- 2) 입소 대상 : 이용 대상은 [노인장기요양보험법]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.
- 3) 모집 방법 :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, 지역사회 홍보, 이용자,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.

2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계약당사자:노인요양시설 경희한방재가노인복지센터 대표자, 신원인수인(주보호자)
- 2) 계약기간 :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- 3) 계약목적 :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4) 계약방법 :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한다.
- 5) 계약의 해제
 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.
 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종사자 및 수급자 간에 성희롱·성폭력 사건발생시
(다만, 수급자의 인지능력, 신체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.)
 -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-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 -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
 -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 -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- 6)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,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.

3.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

1) 법정급여 1일(8시간) 단가 (2025.1.1.기준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 인지지원등급
급여비용(원)	67,770	62,780	57,960	56,380	54,780

2) 비급여 1일 단가

연번	내용	비용	산출단가
1	식사	3,000	1식 1,500*2
2	간식비		1일 간식
3	이미용(필요시)	자부담	미용 자원봉사자활용
4	기타	자부담	

- 3,000원(식사 재료비 / 2식*1,500)